

# 대    법    원

## 제    2    부

### 판    결

사    건      2024다228630 수수료 청구

원고, 피상고인      주식회사 ○○○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○○○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○○○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클래스한결 외 1인

피고, 상고인      △△△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율촌

담당변호사 김은섭 외 2인

원심판결      서울고등법원 2024. 1. 12. 선고 2023나2008073 판결

판결선고      2025. 12. 4.

### 주    문

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수수료 환수금 공제 주장에 관한 부분(608,9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)을 폐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### 이    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.

가. 원고(회생절차 개시와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'원고'라 한다)와 피고는 2019.

8. 1.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판매하는 이 사건 상품의 공급계약 체결을 중개하게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중개로 체결된 공급계약 1건당 55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.

나.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9조는, 원고의 중개로 체결된 이 사건 상품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되었을 경우 이 사건 부속약정서가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고(제1항), 환수금이 피고가 지급할 위탁수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 환수 후 미환수금액을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(제2항).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, 원고가 중개하여 위탁수수료가 지급된 이 사건 상품 공급계약이 해약되거나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환수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피고가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.

다.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월분, 2월분 위탁수수료를 각 그 지급기일인 2020. 2. 28.과 같은 해 3. 28.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. 한편 2019년 11월분, 12월분 위탁수수료 중 일부인 151,120,000원이 이 사건 적립금으로 유보되어 있다.

라. 원고에 대하여 2021. 3. 2.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21. 11. 22.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, 피고는 그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중개로 체결된 이 사건 상품 공급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1,150,170,000원의 수수료반환채권만을 회생채권으로 추후보완 신고하였다.

마.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원심에 이르러 월불입금 연체 및 계

약실효로 인한 환수금 608,900,000원이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

2.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.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 채권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채무자회생법'이라 한다)이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,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그 채권을 신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,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원고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여 피고의 이 부분 채권은 실권되었다.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그 환수금을 공제할 수 없다.

3.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.

가.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고, 공제의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, 기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, 공제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(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4다227699 판결 참조).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된다면,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회생채권자 등의 상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강행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의 취지를 잠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공제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(대법원 2025. 7. 18. 선고 2022다311736 판결 참조).

나.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그가 중개한 이 사건 상품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된 경우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, 수수료 반환액이 위탁수수

료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피고는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을 환수하고 미환수금액은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.

다. 원고와 피고는 하나의 위탁판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지급과 수수료 반환에 관한 채권·채무 관계를 서로 가감하여 정산하기 위해 위와 같이 약정한 것으로서 피고의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원고의 수수료 반환채무는 그 이행에 있어 고도의 견련성이 인정되므로, 피고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할 위탁수수료 금액에서 그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수수료 반환금액은 당연히 공제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고, 이때 별도로 피고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.

라. 그런데 앞서 살펴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제약정에 따르면,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수금 채권, 즉 수수료 반환채권 608,900,000원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해진 기준시점에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.

마.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제약정이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미 공제약정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여 소멸한 채권을 피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약정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수수료 반환채무 소멸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.

바.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공제약정에 따라 정산 대상이 되는 채권·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'2020년 1월분, 2월분 위탁수수료 및 이 사건 적립금' 중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으로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한다.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위 환수금 채권, 즉 수수료 반환채권 전액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다는 이유로 공제될 수 없다고 단

정하고 말았다.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제 및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(덧붙여, 위 공제약정에 따르면 매월 위탁수수료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환수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위탁수수료를 제때 지급하였더라면 공제되었을 환수금액만이 공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).

4.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수수료 환수금 공제 주장에 관한 부분(608,9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)을 파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오경미

## 대법관 권영준

## 주 심 대법관 엄상필

대법관 박영재